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직금의 소멸시효 연장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035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퇴직금의 소멸시효 연장	3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9일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 적응이나 생활 안정 과정에서 권리 행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퇴직금의 소멸시효 연장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퇴직금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5년 간-----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고, 임금채권 역시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고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이 발의되어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임.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기

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면서, 단기(1년·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고,¹⁾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²⁾ 개별 법률에서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할 때에는 「민법」과 「상법」 등의 소멸시효기간 규정을 참고하되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소멸시효제도의 양면적인 의의를 고려하여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음.

개정안은 퇴직금이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 적응이나 생활 안정 과정에서 권리 행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청구권을 더욱 보호하는 의의가 있음.

또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1)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026. 9. 18. 시행 예정이므로, 이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소정의 공소시효가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우선변제권을 갖고, 특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앞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바 근로자가 지급명령, 소 제기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 퇴직금채권은 우선변제권 등 특별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 의무를 3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그 이전의 근로관계에 관련한 퇴직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관계 입증의 곤란함이 있다는 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사례가 대부분 3년 이내인 점³⁾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미국·독일·프랑스 3년, 영국 2년, 중국 1년, 베트남 6개월~1년, 캐나다 6개월 / 일본 5년

문 의 처
02)6788-5538